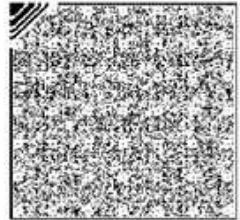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영세의원, 1003)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불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4.7.12 (금)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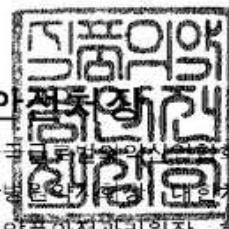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01003호]

-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하도록 함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명령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제약환경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방문의사협회장, 대한간호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회구필수의약품센터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주무관 황재양 약무사무관 박미영 마약정책과장 정현철
진결 2024. 7. 1.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11092 (2024. 7. 1.)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502-604-7992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3
----------	------

발의연월일 : 2024. 6. 26.

발의자 : 권영세 · 이인선 · 이상휘

주진우 · 구자근 · 강대식

주호영 · 조승환 · 유영하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

항 및 제61조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7호의 행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제5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행위(흡연 · 섭취하게 하거나 흡연 · 섭취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및 제2항에”를 “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죄(사용 ·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범한 자

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0조제2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가중(加重)”을 “가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범한 자

제61조제2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5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벌칙)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 략)	제5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7호의 행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加重(加重)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8조의2(벌칙)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제58조의2(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행위(흡연·섭취하게 하거나 흡연·섭취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加重(加重)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9조(벌칙)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p><u>반하여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 <p><u>④ -----부터 제3항까지에-----</u></p> <p><u>-----.</u></p> <p><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p> <p><u>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u></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u>-----</u></p> <p><u>-----가중-----.</u></p> <p><u>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u></p> <p><u>2.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u></p> <p><u>③ (현행과 같음)</u></p> <p><u>제6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u></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u>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p> <p><u>④ (생 략)</u></p> <p><u>제60조(벌칙) ① (생 략)</u></p> <p><u>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u>가중(加重)</u>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③ (생 략)</u></p> <p><u>제61조(벌칙) ① (생 략)</u></p> <p><u>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u></p>	

하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 ----
<u><신 설></u>	<u>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u>
<u><신 설></u>	<u>2.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5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